

국가대표운영규정

체정 2014.12. 3.

개정 2019.12.12.

전부개정 2021.12.15.

개정 2023. 6.26.

개정 2023.12.1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관장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하 “선수단” 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국가대표 선수단” 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 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및 협회가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골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 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의제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협회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 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트레이너” 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기경력“이란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선수로 등록하고 활동한 경력으로 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7. “경기 지도경력“이란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하고 선수를 지도한 경력으로 협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8. “전문스포츠지도사” 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9. “강화훈련” 은 협회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0. “국가상비군” 은 국가상비군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11. “국가상비군 지도자(이하 상비군 코치라 한다)”는 국가상비군 선수의 전반적인 통솔 및 훈련을 위해 협회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12. “국가상비군 선수(이하 상비군 선수라 한다)”는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선수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3조(선수단의 구성 및 인원) ① 선수단은 코치, 감독, 선수 및 지원인력(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1.12.15.>

② 선수의 인원은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선발규정에 의거 선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지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국가대표 코치 4명
2. 국가상비군 코치 약간 명
3. 트레이너 약간 명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 ①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국가상비군 지도자 포함)를 선발하되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트레이너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회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트레이너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국가상비군 지도자 포함)는 협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

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2.15.>

1. 골프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골프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2. 골프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골프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3. 골프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골프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4. 골프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골프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스포츠클럽에서 5년 이상의 지도경력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1. 골프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골프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5.>
2. 골프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골프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5.>
3. 골프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골프 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5.>
4. 골프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골프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스포츠클럽에서

2년 이상의 지도경력 있는 사람 <신설 2021.12.15.>

④ 협회가 인정하는 국가대표 훈련 지도자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협회가 정식으로 파견하는 대회에 한한다.

⑤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개정 2023.12.15.>

⑥ 국가상비군 코치는 골프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15.>

1. 회장이 추천한 자로 골프 선수 및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15.>

2. 회장이 골프 종목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해당 코치로 선임·교체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목개정 2021.12.15.]

제6조(국가대표 트레이너의 자격)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12.15.>

[본조신설 2021.12.15.]

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중에서 협회가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경기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선발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경기임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강화 훈련 지도자 선발 절차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1.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프로종목의 지도자

2. 국가대표 선발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팀으로 선발하는 경우

3. 강화훈련 지도자 정원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특별히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4.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 확정된 이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공개선발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가 제3항제1호의 경기임원을 선발할 경우 사전에 선발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하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 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경기임원을 선발한 때에는 즉시 선발사유를 포함하여 선발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 이외의 국제경기대회의 경기임원 선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 후 체육회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8조(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절차) ① 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 포함)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 결정과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회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선발하되 국가대표 선수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 포함)는 선발규정에서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 포함)를 선발하고자 할 때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제연맹(IGF, APGC 등)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특정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태평양팀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의 선발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15., 2023. 6.26.>

⑥ 제5항에 따라 선수가 선발되었더라도 대회 주최 측의 사유로 인하여 대회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재선발한다. <신설 2023. 6.26.>

[본조신설 2021.12.15.]

제9조(국가대표 선수의 자격) ①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 포함)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12.15.>
3. 협회(시도협회 포함) 및 산하연행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 원 초과외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1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12.15.>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3.12.15.>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15.>
15.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16. 스포츠공정위원회(산하 연맹 및 시·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에 회부되어 징계 심의 중인 사람은 해당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로 국가대표(국가상비군 포함)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회장은 선발된 국가대표(국가상비군 포함)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회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처리내용은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국가상비군 포함)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국가상비군 포함)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 팀의 장

[본조신설 2021.12.15.]

제12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국가상비군 포함)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3조(선수단의 임기) ① 선수단(국가상비군 포함)의 임기는 협회에서 정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경기대회의 국가대표로 확정된 날부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 개최 일까지로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가 선발된 이후 협회에서 정한 임기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수에 대한 행정 조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4조(지도자의 임무) ①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개정 2021.12.15.>
2. 국가대표(국가상비군)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신설 2021.12.15.>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신설 2021.12.15.>
4.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개정 2021.12.15.>
5.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신설 2021.12.15.>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설 2021.12.15.>
7.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 보호 <신설 2021.12.15.>
8.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신설 2021.12.15.>
9. 기타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신설 2021.12.15.>

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국가대표에 대한 전문분야 지원 <신설 2021.12.15.>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신설 2021.12.15.>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 결과보고 <신설 2021.12.15.>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신설 2021.12.15.>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21.12.15.>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15조(선수의 임무) 국가대표 선수(국가상비군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대표 지도자(상비군 코치)가 계획한 훈련 참여 <개정 2021.12.15.>
2.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개정 2021.12.15.>
3. 선수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 <개정 2021.12.15.>
4. 성실한 훈련태도로 훈련에 임할 의무
5.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 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
6.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신설 2021.12.15.>
7.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신설 2021.12.15.>

제1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국가상비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국가상비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국가상비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17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협회는 국가대표(국가상비군)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절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본조신설 2021.12.15.]

제18조(선수단의 소집 및 통보) ① 선수단의 감독 또는 코치는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선수단의 소집일정을 소집일 7일 전까지 선수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 선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2항의 통보로는 우편물, FAX, e-mail을 포함하고, 전화, 메시지 등은 보조수단으로 한다.

④ (소집불참)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수는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회는 결손된 선수인원에 한하여 소집일 3일 전까지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불참 선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사유(부상 시 진단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기간 및 대표단 해제 3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공식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⑤ (긴급소집) 대표단의 코치 또는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한 경우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18조(선수소집 개시일) 대표단의 코치 및 감독은 목표 대회의 소집일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선수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0조(훈련기간) ① 훈련기간은 목표 대회를 대비한 협회 훈련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지도자는 협회의 기본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기간 내에 훈련 실시가 곤란하거나 훈련실시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훈련효과 증대를 위하여 매주 주말휴가와 격월 1주일 이내의 인터벌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1조(감독, 코치 등 지도자 선임) ①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는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년 이상의 골프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종목의 지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2급 전문 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갈음하여 국가대표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1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도자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③ 협회가 인정하는 국가대표 훈련 지도자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협회가 정식으로 파견하는 대회에 한한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2조(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 ① 감독 또는 코치는 훈련 또는 대회 전 계획서를, 훈련 또는 대회 후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의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3조(유니폼 착용) ① 선수단의 감독, 코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모든 선수는 선수단의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 본 회의 요청에 따라 선수단원의 자격으로 공식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용품을 착용해야 하며, 착용에 관한 적용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3. 6.26.>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4조(초상권) ① 대표단은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단원들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보유한다.

② 대표단은 협회의 지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 경기 종료 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표단은 자신의 대표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 방송 및 광고 출연, 출판 등을 할 때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조의 초상권, 집합적 초상권 및 대표팀 초상 등에 관한 정의는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5조(선수단의 보험) 협회는 선수단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협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6조(수당 지급) ① 수당이라함은 각급 선수단의 훈련에 대하여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15.>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② 실비라 함은 각급 선수단 선수가 소집, 훈련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상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의 종류,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관리지침에 준한다.

⑤ 국고보조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⑥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① 지도자 및 선수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에서 정한다.

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선수단의 운영 및 조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2021.12.15.>
2.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공헌한 자
3. 훈련 및 관리에 전념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
4. 평소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력이 뛰어나며, 대표단의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인 자
5. 기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8조(징계) ① 본 규정에 해당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회부와 동시에 대표팀 지도자 및 국가대표(상비군) 자격이 정지된다.

② 징계 양정을 위하여 협회는 징계의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 다음 각 호 및 본 규정에 해당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연맹체 또는 시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에 징계 심사 대상으로

회부할 수 있다. 단,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가 국가대표(상비군)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국가대표(상비군)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로 임시 출전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와 같은 긴급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는 연맹체 위원회 또는 시도협회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긴급제한 조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하여 골프인으로서의 품위나 명예를 훼손한 자

[본조 번호 수정 2021.12.15.]

제29조(국가대표·국가상비군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협회는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대표(국가상비군)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협회는 국가대표운영규정에 반드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협회는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발 및 운영규정을 제·개정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6개월 이내에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에 대해 체육회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5.]

제30조(경과)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15.>

제31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협회 ‘훈련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5.]

부 칙 <2014.12. 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4.12.3)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 ① 이 규정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국가대표 지도자는 적용일까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제10조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9. 6. 2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제10조제10호는 형법 제246조, 제247조의 전문개정의 시행일인 2013. 4. 5. 이후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부 칙 <2023. 6.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3. 6.26.>

유니폼 착용의 적용 범위 (근거 제23조제1항)

구 분	적 용	미 적 용
각종행사	- 교육, 강화훈련 등 연간 계획에 의한 사업 - 협회의 소집에 의한 대표성을 갖는 행사	참가자격을 개인이 획득한 국내·외 대회 (아마추어월드랭킹 및 예선전 포함) 및 행사
국내대회	- 국가대표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회 - 프로단체 주최·주관 대회에 추천받는 선수	
국제대회	- 협회에서 파견하는 대회(프로대회 포함)	